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제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441 발의연월일: 2023. 4. 18.

발 의 자:장제원·류성걸·태영호

김정재 • 유경준 • 임병헌

이 용・이인선・조은희

임이자 · 김형동 · 김석기

성일종 · 배현진 · 박성민

이명수 · 이달곤 · 이용호

김영선 · 서병수 · 김미애

서범수 · 조해진 · 유상범

장동혁 • 전봉민 • 안병길

정진석 • 유창혁 • 전주혜

윤주경 • 이태규 • 김승수

김용판 · 정희용 · 이채익

박대출 · 송석준 · 이만희

이주환 • 이철규 • 조경태

유두현·정경희·양금희

조수진・金炳旭・신원식

의원(48인)

찬 성 자:지성호 의원

제안이유

최근 청년 · 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 · 오피스텔 등에서 자주

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「국세기본법」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전세권 등의 설정일 등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우선 변제하지 않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변제하도록 개정한 바 있음.

이에 지방세 또한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 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.

한편,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 등과 관련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하위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,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의 기본적·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절차 등을 상세히 정하여 지역별 차별 없이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지방세 우선징수의 예외 신설(안 제7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)

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 차보증금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해당 재 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토록 규정함.

나. 세무조사 절차 등의 행정규칙 제정 근거 마련(안 제85조의2 신설)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, 업무절 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방세(이하 이 조에서 "재산세 등"이라 한다)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(이하 이 조에서 "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"이라 한다)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의 우선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.
- 1. 재산세
- 2. 지역자원시설세(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)
- 3. 지방교육세(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)
- ⑦ 제6항에 따라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

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의 징수액에 한정하며,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1항제 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5조의2(세무조사의 절차 등)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, 제80조의2,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, 제84조의2, 제84조의3 및 제8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 세무조사(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)의 기본적인 사항, 업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지방세징수법」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「민사 집행법」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71조(지방세의 우선 장	수) ①	제71조(지방세의 우선 징수) ①
~ ⑤ (생 략)		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⑥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
		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
		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다음 각
		호에 따른 지방세(이하 이 조
		에서 "재산세 등"이라 한다)를
		우선 징수하는 경우에도 불구
		하고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
		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
		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
		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
		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
		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
		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(이
		하 이 조에서 "임대차보증금반
		환채권 등"이라 한다)은 해당
		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
		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
		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
		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
		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
		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의 우선
		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

<신 설>

<신 설>

수 있다.

- 1. 재산세
- 2. 지역자원시설세(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)
- 3. 지방교육세(재산세에 부가되 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)
- ⑦ 제6항에 따라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의 징수액에 한정하며,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등의 변제액과 제1항제3호 각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변제액이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- 제85조의2(세무조사의 절차 등)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, 제80 조의2,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, 제84조의2, 제84조의3 및 제85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

세무조사(범칙사건조사를 포함 한다)의 기본적인 사항, 업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